

# 호주 양육비 제도의 발전과 가이드라인

## *Child Care Assistance in Australia: Evolvment and Guidelines*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호주에서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이혼으로 발생하는 이혼가정 자녀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육비 제도'를 1988년에 도입하였다. 호주에서의 '양육비(Child Support)'라 함은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혼한 부모 사이에 이전(Transfer)되는 급여(money)를 의미한다.<sup>1)</sup>

이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매년 10만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되고 있고,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이혼건수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한하여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개입한다. 그런데

양육비 산정의 방식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양육비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년 이상 '양육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호주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식을 모색코자 한다.

1)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0-2012 Compliance Program-CSA: Supporting parents to meet their child support responsibilities」 2009. (<http://www.csa.gov.au/publications/4525.php>)

## 2. 호주의 ‘양육비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 1) 2000년대 이전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호주에서는 1988년 이전까지 가정법원이 이혼 및 별거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비동거한부모로부터의 자녀양육비 지불이 저조하였고, 법원을 통한 이혼 가정 현황의 업데이트 및 비동거한부모의 지불 의무 감독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자녀양육비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1988년 「자녀양육비 자문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양육비 산정방식을 검토하게 되었다.<sup>2)</sup> 새로운 자녀양육비 산정방식은 ‘연속성의 원칙’(Continuity of expenditure)을 전제하였는데, 이는 이혼부모들이 만약 이혼하지 않았을 경우 아이에게 지출해야 할 비용을 이혼 후에도 아동에게 동일한 비율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던 자녀양육조정에 비하여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인 점, 국민들이 자녀양육비 지불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수용하게 한 점 등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sup>3)</sup>

### 2) 2000년대의 발전과정

1988년에 개정된 양육비정책이 효율성면에

서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혼한부모의 증가와 여성한부모의 취업률 증가와 같은 호주사회의 가족형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호주의회는 자녀양육비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위원회(Ministerial Taskforce on Child Support)’를 구성하여 기존의 자녀양육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에 보고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존(1988년 개정) 자녀양육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첫째, 산정식에서 고정된 비율(Fixed Percentages)은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실제 양육비 지출액의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 시는 오히려 고소득 자일수록 자녀양육비 지출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현재의 자녀양육비산정은 비동거부모만의 수입을 가족의 주된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주 수입의 최저임금 수준만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양 부모가 동등하게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정의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기존 양육비 계산방식은 아동의 성장주기가 반영된 시의적절한 양육비 제공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양육비 계산방식은 13세 이상 청소년 부양에는 모자란 금액

2) 호주 Ministerial Taskforce on Child Support, 2005.

3) 호주 Ministerial Taskforce on Child Support, 2005.

4) 호주 Ministerial Taskforce on Child Support,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Reforming the Child Support Scheme, 2005.

을, 12세 이하 아동의 부양에는 과한 금액을 지출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현 양육비산정 방식은 저소득 양육비 납부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 가정의 자녀에게는 양육비 감면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 가구의 실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양육비 감면으로 인해 아주 적은 액수의 소득 증가만이 발생한다. 저소득 부모와 고소득 부모 모두를 고려할 때, 현행 양육비 산정방식은 공정하지 못한 소득분배의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 3) 2005년의 자녀양육비 제도 개혁

호주는 2005년 가족법 체계(the Family law system)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양육비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균형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혼가정의 아동이 가족해체 후에도 그들의 부모와 안전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가족 및 이혼부모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호주 자녀양육비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방식 개선의 주요 내용이다.<sup>5)</sup>

첫째, 자녀를 돌보는 비용의 고려(Taking account of childcare costs)이다. 0~4세까지의 어린 자녀를 돌봄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실

질적인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해, 0~12세까지의 자녀양육비 산정은 5~12세 아동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부모가 호주 내 특정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인해 일반적인 자녀양육비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의 양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모는 초과지출에 대한 국가의 재사정 및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고정비용 폐지와 양 부모 소득의 고려이다. 두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자녀의 연령을 두 그룹(0~12세와 13~17세)으로 나누어 아동의 연령변화와 부모의 소득수준 모두를 고려한 양육비 산정이 가능케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13~17세 청소년을 양육하는 비용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은 일반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최저생계비 증가(An increased self-support amount)의 반영이다. 새로운 양육비산정에 있어 기존 양육비산정식에 반영되는 최저생계비인 한 자녀양육비의 110%(2005년 기준 \$13,462)에서 MTAW(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 호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해 정의된 남성의 평균 주급)의 1/3수준('05~'06년 호주 회계연도의 주급 기준, 약 \$16,883)으로 인상하여 반영하였다.

넷째, 두 번째 가족(Second families)의 반영이다. 이혼부모의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의 자녀들은 자녀양육비 산정에 있어 최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다섯째, 자녀가 다른 가정에서 부양받고 있는 경우의 자녀양육비 지급이다. 비동거부모가

5) Ministerial Taskforce on Child Support,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Reforming the Child Support Scheme, 2005.

자녀양육비의 지불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둘 혹은 그 이상의 가정에서 부양받고 있을 경우(자녀가 둘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자녀양육비의 계산은 비동거부모 1인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된다. 산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명수에 의하여 균등히 나뉘어 각 가정에 지급된다.

### 3. 호주의 자녀양육비관련 법 · 제도

#### 1) 양육비 조정에 있어 CSA에게 1차적인 권한부여

2005년 전면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CSA를 통한 양육비 지급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법정에서 자녀양육비 관련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법 개정 이래로 가정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른 양육비 결정보다는 그 전에 여러 단계의 중재과정을 통해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권장된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법 66E조항에서 '법률은 만약 CSA가 자녀양육비 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자녀양육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이라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CSA가 자녀양육문제 조정에 있어 1차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89년 「자녀양육비지원법」의 152조 역시 자녀양육비 사정과 양육비 지급에 있어

CSA의 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비 지원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인 법적 절차 보다는 CSA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권장하였다. 이는 아동양육에 있어,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판사가 결정을 내릴 경우 높은 비용과 행정적 수요가 발생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CSA가 양육비의 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18세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녀양육조정에 개입한다.

#### 2) 자녀양육비 심사과정의 일체에 대한 법률적 근간 제공

호주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의 일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1988~1989년에 개정된 자녀양육비법(the Child Support Act)이며, CSA 설립의 법적 근간이 된다. 또한 「자녀양육비사정법」(the Child Support Assessment 1989)과 「자녀양육비 등록과 수집법」(the 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1988)은 CSA의 자녀양육비 심사과정 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녀양육비사정법」은 자녀양육비 사정에 있어 양육비계산식과 일치하는 자녀양육비산정의 행정관련 절차의 일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양육비 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사항은 양육비의 신청자격, 기본산정식(Basic Formula)을 적용한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양육비 산정에 고려되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 등의 내용이다. 「자녀양육비 등록과 수집법」은 자녀양육비의 법적명령의 등록, 양육비의 수집, 양육비의 법적 이행과 양 부모의 자녀양육명령 등록에 대한 동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이 법안에서는 확정된 자녀양육비의 지불 방법, 지불자의 의무, 법원을 통해 확정된 자녀양육비를 CSA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회보장항소위원회(Social Security Appeal Tribunal, SSAT)를 통한 재심사 요청, 자녀양육비 지불의무 미이행시 CSA와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4. 호주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 1) FaHCSIA와 DHS

호주의 양육지원체계는 연방정부의 두 부처의 협동에 의하여 구성된다. 먼저 FaHCSIA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을 담당하고, 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자녀양육이행기관(Child Support Agency, CSA)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한다. 즉, FaHCSIA에서 Child Support program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 DHS에서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 2) Child Support Agency(CSA)

자녀양육비 정책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CSA

(Child Support Agency)는 처음에는 호주 국세청 소속기관이었으나 1997년 FaHCSIA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DHS 소속기관이다. 이 기관은 주 사무실 외에 각 주의 주도과 주요 도시 14군데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CentreLink와 연계하여 30여개의 지역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기관의 핵심업무는 자녀양육비 산출·수급·전달·강제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자녀양육비 지불 비율을 사정(Assessment)하고 결정
- CSA에 자녀양육비 이전 대행을 신청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수집하고 이전하는 업무
- 호주의 양육비관련 국제적 의무 이행의 관리
- 부모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녀양육비와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 이혼부모들의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연계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체계의 발달 및 개선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 자녀양육비 이행은 [그림 1]의 중심에 있는 큰 화살표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특별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특별심사과정에서 CSA는 이혼 부부와 자녀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왼쪽 곡선 화살표). 또한 이혼부부의 어느 일방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만해소를 위한 노력과 조정을 한다(오른쪽 곡선 화살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원을 할 수 있

는데, 청원은 FaHCSIA 소속의 별도 독립기관인 ‘사회보장항소위원회’(Social Security Appeal Tribunal, SSAT)에서 다룬다. 이 위원회의 직원은 비공무원의 전문가로서 임명직이며 이외에 업무를 보조하는 별도의 행정직원을 두고 있다.<sup>6)</sup>

자녀양육비의 모든 이행절차에 CSA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부부는 스스로 합의에 의하여 양육비 사정을 할 수 있으며, CSA에 지불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 지불과 수급에 있어서는 CSA의 간섭 없이 사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자녀양육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한부모의 요청으로 인하여 CSA가 자녀양육비 수집에 있어 개입하게 될 경우, CSA는 지불의무를 가진 부(父) 또는 모(母)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원조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 부(父) 또는 모(母)가 자녀양육비의 지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양육비 지불 의무에 있어서의 태만 등의 증거가 포착될 경우, CSA는 법적 조치를 통하여 아동과 부모들, 납세자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가고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한다. 즉, 부부 사이의 자녀양육비용 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CSA가 개입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법원의 동의 없이 CSA는 산출

된 양육비의 지급을 비동거한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父) 또는 모(母)가 양육비 지불을 이행치 않을 시, CSA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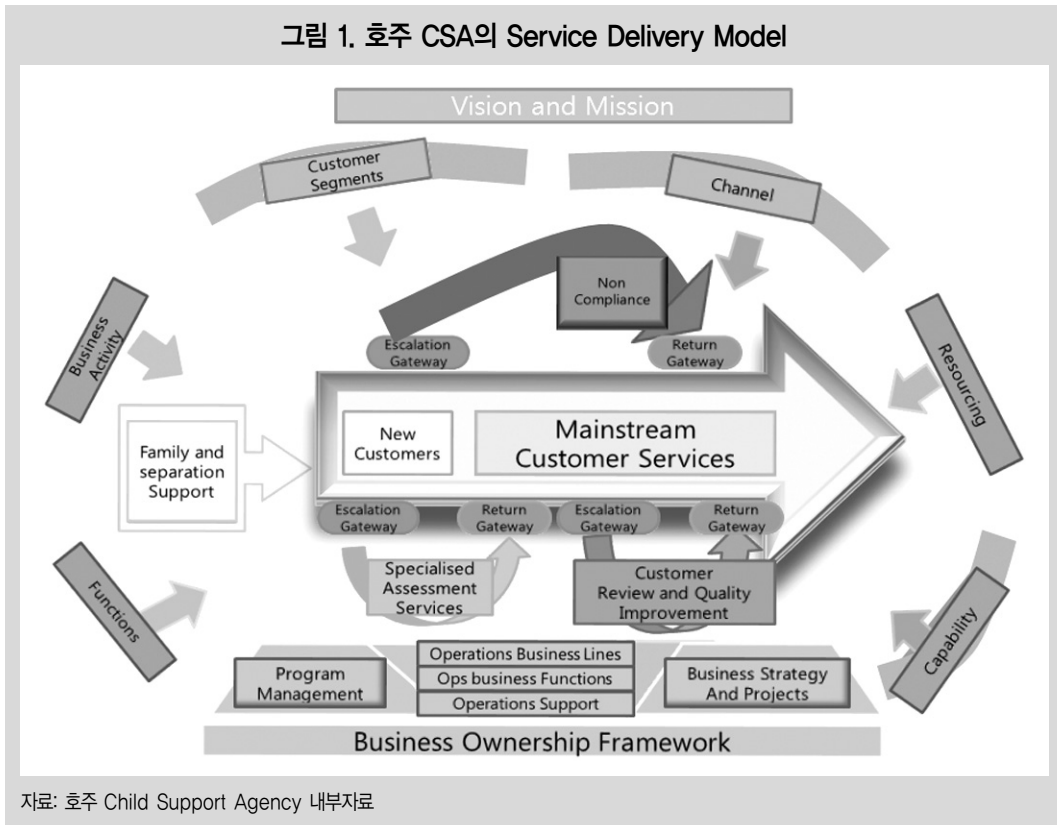
- (부(父) 또는 모(母)의) 원천징수 소득액으로 부터의 양육비 차감
- 세금 환급금 강제 추징
- 세금 환급금 미지급
- 미지급 양육비를 빚으로 간주하고 강제 회수
- 해외여행 금지
- 법적 고소: 소득접근이 안되거나 부동산 처분 등 법적 강제통로(법원결정)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것이며, 흔하지 않음
- 직접 관찰: 비과세에 해당되는 일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회피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 5. 호주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호주에서는 한계비용추정방식을 적용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와 동일한 생활수준에 있는 자녀가 없는 가구와의 지출수준 차이로 자녀양육 지출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비, 연료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한 가구를 동일한 생활수준에 있는 가구로 정의된다.<sup>7)</sup> 양육지출비용에는 자녀양육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용은 각 연도별

6)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Parents' Guide to Child Support*, Australia, 2009b.

7) 자녀양육비용을 추계하는 연구들은 "동일한 생활수준"의 정의를 위해 Engel 추계방식을 사용함(총 지출에서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가구).



로 추계하며, 소득수준도 각 연도별로 추계한다. 이를 위해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각 연도별로 추계한다.<sup>8)</sup>

호주의 자녀양육비의 실제 산정은 FaHCSIA에서 개발한 계산식(Child Support Formula: 부모의 수입, 자녀 양육 여부, 자녀 연령 등을 모두 반영한 양육비 계산식)에 의한다. 호주의 자녀양육비 산출 및 결정 방법은 정책의 주체인 (비)양육한부모, 자녀 등이 수급할 수 있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양육비의 부담은 각각의 부모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 이외에 양육을 제공하는 제3의 양육자의 수입은 고려되지 않는다. 2005년 이전에는 고정비율을 적용한 한 가지 계산식만 있었으나, 개정 이후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음의 6가지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8) Birks, Stuart, “An assessment of proposed change to the child support formula”, Policy Quarterly, Vol 7(1), 2011.

방식	내용	고려하는 소득
첫째 방식	•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본적 산정법	부모 모두의 소득 고려
둘째 방식	• 부모가 아닌 양육자(조부 등)가 존재하는 단일 사례 산정법	부모 모두의 소득 고려
셋째 방식	• 부모가 아닌 양육자가 없는 다중 사례 산정법 • 예, 이혼 후 재혼으로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부모 모두의 소득 고려
넷째 방식	• 부모가 아닌 양육자가 존재하는 다중 사례 산정법 • 예, 모(母)가 양육하는 자녀, 조모(祖母)가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부모 모두의 소득 고려
다섯째 방식	• 한 부모의 소득만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는 부모가 아닌 양육자 산정방식 • 예, 한 부모가 실직, 질병 등의 특별한 상황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한 부모의 소득만 고려
여섯째 방식	• 한 부모의 소득만을 양육비산정에 반영, 부모가 아닌 양육자가 존재할 경우 산정방식 • 예, 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	한 부모의 소득만 고려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09). *The parents' guide to child support.*' 내용 재구성

자녀양육비 실제 계산은 기본계산식(Basic formula)이라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sup>9)</sup>

제1단계, 가장 최근의 과세액을 기반으로 하여 양 부모의 '조정된 과세대상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s: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의 이자율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제 과세에 반영될 액수가 조정된 소득액)을 확보한다.

제2단계, 각 부모의 '아동양육비소득'(Child Support Incomes)을 계산한다. '아동양육비소득'은 '조정된 과세대상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만약 두 부모 중 한 부모 혹은 두 부모 모두 새로운 생물학적 자녀 혹은 입양자녀를 가졌을 경우, 최저생계비는 부모(들)의 '조정된 과세대상 소득'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인상된다.

제3단계, 양 부모의 '아동양육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표준 자녀양육비 산정표'의 비율에 대입하여 양육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양육비는 만약 두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에게 지출하였을 양육비의 액수로 간주된다.

제4단계, 이렇게 계산된 양육비는 다시 각 부모의 지불 능력(아동양육비소득)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각 부모에게 할당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부모가 공통의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된 양육비를 각자의 소득수준에서 적합한 비율로 나눈다.

마지막 단계,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일수(日數)를 양육비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분담양육'(Shared Care)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분담양육'에 대한 양육

9) Commonwealth of Australia(2009). *2010~2012 Compliance Program-CSA: Supporting parents to meet their child support responsibilities.* (<http://www.csa.gov.au/publications/4525.php>)



표 1. 호주의 표준 자녀양육비 산정표(2011년 현재)

양 부모의 합산된 소득(최저생계를 제외한 소득만 반영)						
자녀수 (명)	\$0~ \$30,891	\$30,892~ \$61,781	\$61,782~ \$92,672	\$92,673~ \$123,562	\$123,563~ \$154,453	\$154,453 초과
<b>자녀 양육비(양 부모에게 할당될 금액)</b>						
<b>0~12세의 자녀</b>						
1명	\$1당 17c	\$5,251 \$30,891 초과: \$1당 15c 추가	\$9,885 \$61,781 초과: \$1당 12c 추가	\$13,592 \$92,672 초과: \$1당 10c 추가	\$16,681 \$123,562 초과: \$1당 10c 추가	\$18,843
2명	\$1당 24c	\$7,414 \$30,891 초과: \$1당 23c 추가	\$14,519 \$61,781 초과: \$1당 20c씩 추가	\$20,697 \$92,672 초과: \$1당 18c 추가	\$26,257 \$123,562 초과: \$1당 10c 추가	\$29,346
3명 이상	\$1당 27c	\$8,341 \$30,891 초과: \$1당 26c 추가	\$16,372 \$61,781 초과: \$1당 25c 추가	\$24,095 \$92,672 초과: \$1당 24c 추가	\$31,509 \$123,562 초과: \$1당 18c 추가	\$37,069
<b>13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b>						
1명	\$1당 23c	\$7,105 \$30,891 초과: \$1당 22c 추가	\$13,901 \$61,781 초과: \$1당 12c 추가	\$17,608 \$92,672 초과: \$1당 10c 추가	\$20,697 \$123,562 초과: \$1당 9c 추가	\$23,477
2명	\$1당 29c	\$8,958 \$30,891 초과: \$1당 28c 추가	\$17,607 \$61,781 초과: \$1당 25c 추가	\$25,330 \$92,672 초과: \$1당 20c 추가	\$31,508 \$123,562 초과: \$1당 13c 추가	\$35,524
3명 이상	\$1당 32c	\$9,885 \$30,891 초과: \$1당 31c 추가	\$19,461 \$61,781 초과: \$1당 30c 추가	\$28,728 \$92,672 초과: \$1당 29c 추가	\$37,686 \$123,562 초과: \$1당 20c 추가	\$43,864
<b>연령대가 혼합된 경우(2명 이상의 자녀)</b>						
2명	\$1당 26.5c	\$8,186 \$30,891 초과: \$1당 25.5c 추가	\$16,063 \$61,781 초과: \$1당 22.5c 추가	\$23,013 \$92,672 초과: \$1당 19c 추가	\$28,882 \$123,562 초과: \$1당 11.5c 추가	\$32,434
3명 이상	\$1당 29.5c	\$9,113 \$30,891 초과: \$1당 28.5c 추가	\$17,917 \$61,781 초과: \$1당 27.5c 추가	\$26,412 \$92,672 초과: \$1당 26.5c 추가	\$34,598 \$123,562 초과: \$1당 19c 추가	\$40,467

자료: 호주 Child Support Agency 홈페이지(<http://www.csa.gov.au>)의 내용을 재구성

비 지출의 인정은 '분담양육에 의한 자녀양육  
비 분담비율표'에 의한다.

비동거부모가 제공하는 돌봄이 연 기준  
35~48% 미만일 경우 이는 '분담양육'에 해당

**표 2. 분담양육(Shared care)에 의한 자녀양육비 분담비율표(2011년 현재)**

연(年) 기준 돌봄 제공 비율	자녀양육 순 지출(net cost)의 비율
14% 미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Null)
14~35% 미만	24%
35~48% 미만	25%+25%를 초과하는 퍼센트마다 2%를 곱하여 합산
48~50% 미만	50%
52~65% 미만	51%+25%를 초과하는 퍼센트마다 2%를 곱하여 합산
65~86% 미만	76%
86~100% 미만	100%

자료: 호주 Child Support Agency 홈페이지(<http://www.csa.gov.au>)의 내용을 재구성

되고, 비동거부모가 양육비에서 25%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분담양육’의 사례에 있어 한 부모의 양육지출이 두 부모의 합산된 ‘자녀양육비소득’보다 적은 경우 그 부모는 다른 한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가진다.

호주 CSA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비 계산기는 양육비 계산의 6가지 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경우인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본적 산정법에 대한 계산만 가능하며, 위와 같이 부모 외의 양육자가 아동을 돌보는 경우 양 부모가 양육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자녀양육비의 계산 등 나머지 5가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양육비 계산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 6. 시사점

양육비의 산정 및 이행 가이드라인에서 앞서고 있는 호주제도를 논의하였다. 이는 양육비

산정과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한국사회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양육비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통일된 양육비 산정 계산식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정형화된 산정식을 만들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육비 산정을 위한 법원판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비 제도가 가족제도 및 사회복지제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즉, 양육비 제도가 기초보장제도, 아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정책, 가족수당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보충적 급여 또는 수당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규명이 있어야 한다.

넷째, 양육비 이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행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요구된다.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조직 내에서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민간복지기관에의 의존성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호주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당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소득과 재산의 투명성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논쟁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에는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제약요인일 것이다.

여섯째, 양육의 책임을 지는 자녀연령을 몇 세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것으로 양육비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나, 미성년기를 넘어서도 자녀양육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을 지고있는 한국사회에서 과연 이러한 개념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